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방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방부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군내 질병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복제·군기·안전·상훈·군예식”을 “복제·상훈·군예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의2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차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군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군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3. 군내 인권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군 인권업무 관련 대내·외 협조
5. 병영문화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조정

6. 군인의 복무·군기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9. 군내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77”을 “679”로 하고, 일반직 계 “669”를 “67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46”을 “649”로, 전문경력관 “6”을 “5”로 한다.

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 중 1명(4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국방부의 공무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법무관리관) ① (생략)	제8조(법무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②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u>14. 군내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5.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u><삭 제></u>
제13조(인사복지실) ①·② (생략)	제13조(인사복지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7.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8. 군인의 <u>복제·군기·안전·상훈·군예식</u> 및 행사에 관한 사항	8. ---- <u>복제·상훈·군예식</u> - ----- --
9. ~ 29. (생략)	9. ~ 29. (현행과 같음)
<u>29의2. 국방여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30. ~ 33. (생략)

<신설>

30. ~ 33.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차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군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군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3. 군내 인권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군 인권업무 관련 대내·외 협조
5. 병영문화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조정
6. 군인의 복무·군기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u>7.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u> <u>8.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u> <u>9. 군내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u>④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u> <u>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u> <u>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u>
제30조(한시정원)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	제30조(한시정원) ① ----- -----

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6월 30</u>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②·③ (생략)	----- ----- ----- <u>2025년 6월 30</u> <u>일</u>-----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7</u>	<u>679</u>	+2
•	•	•	
•	•	•	
일반직 계	<u>669</u>	<u>671</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46</u>	<u>649</u>	+3
전문경력관	<u>6</u>	<u>5</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3